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32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김한규·김태년·오기형

위성곤 • 손명수 • 이원택

이건태 • 민병덕 • 정진욱

박상혁 · 문대림 · 양부남

이기헌 • 박희승 • 정준호

조인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 1항 등).

법률 제 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추 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예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기 관은 이 법 시행일에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중심지지 원센터 설치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 규정에 따른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의 소관 사무는 예정기관 에 새로 설치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이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융 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 5. • 6. (현행과 같음) 5. • 6. (생략)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는 단체 중 위원회의 심의를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둔다. <후단 신설> 기관 또는----------. 이 경우 「금 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